
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

2026. 8. 21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 .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	1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 .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	1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

2026. 8. 21.

기 획 예 산 처

순 서

I. 추진배경	3
---------------	---

II. 추진방안[안]	5
-------------------	---

1. 수입	5
-------------	---

2. 교부금 · 교부세 조정	7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지출	8
-------------	---

4. 기금의 운용	9
-----------------	---

III. 향후 일정	9
------------------	---

I. 추진배경

1) 반도체 추가세수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확보한 소중한 자원

□ 인공지능(AI)은 단순한 기술혁명을 넘어, 경제·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촉발

○ 해외 주요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* 감행 중

* 5대 빅테크(아마존, 구글, MSFT, 메타, 오라클) CAPEX 투자 추이(스탠퍼드大, 억불):
(‘18) 800 (‘20) 1,100 (‘22) 1,600 (‘24) 2,450 (‘25) 3,800

□ 이번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,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⇒ 이렇게 확보한 재정여력을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중한 실탄으로 활용할 필요

2)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 시급

□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추세* → '40년대 0%대 전망

* 잠재성장률 추이(OECD 경제전망, %): (‘86~‘90) 9.5 (‘91~‘95) 8.8 (‘96~‘00) 6.1
(‘01~‘10) 4.6 (‘11~‘15) 3.4 (‘16~‘19) 2.8 (‘20~‘24) 2.5 (‘25) 1.9 (‘26°) 1.7 (‘27°) 1.5

○ AI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
향후 2~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시기

□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경우, 골든타임 실기 우려

⇒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전환하여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할 필요

3) 세수변동성을 완화·흡수하는 재정안정화 장치 마련 필요

□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특정 핵심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
업황 주기(3~5년)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게 발생

○ 세수 변동성 발생시 경기동행적 재정운용* → 변동성 확대 등
부작용 발생(재정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 약화)

* (경기 확장기) 차년도 세수 증가 → 확장적 재정운용 → 과열 심화, 물가 자극
(경기 둔화기) 차년도 세수 감소 → 긴축적 재정운용 → 침체 심화

□ 내국세 수입과 일정 비율로 연동*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
재정교부금도 재정운용상 안정성 저하

* 내국세 수입 × (지방교부세) 19.24% / (지방교육교부금) 20.79%

⇒ 우리 경제의 특성을 반영, 재정운용의 안정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해
세수변동성을 완화·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
◆ 「미래대응기금」을 신설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,
초과세수 및 기타 기금 운용수입 등을 별도 적립·활용

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

-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① 청년, ② 성장동력, ③ 지방,
④ 교육·인재 분야에 중점 투자
-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수요에 신속 대응

② 재정운용의 안정성·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

-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
- 세수 결손 등 발생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여력 적기 보강

II. 추진방안(안)

1 미래대응기금의 수입

1) 추가세수: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

- ☐ (개념)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*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, 그 상회분
 - * 내국세 중 ❶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되지 않거나(예: 주세, 농특세) ❷ 포함되더라도 특정 용도로 전출되는 세목(예: 교육세, 종부세, 교통세, 개소세 담배분)은 제외
 - (추세 판단기준)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
 - * '27년 추세치 = '25년 결산액 × (1 + 최근 10년('15~'25년) 연평균 증가율)²
- ☐ (적립방식)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(추세치 하회시 전출)

2) 초과세수: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

- ☐ (개념) 세입 재추계(국가재정법 제55조의2, 9월)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증가할 경우, 그 증가분
- ☐ (적립방식) 세입·세출 外로 전입(세입결손 발생시 전출)

3) 기타: 세계잉여금 잔여재원, 여유자금 운용수익

- ☐ (세계잉여금 잔여재원)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상 처리절차*에 따라 정산한 후 남은 재원
 - * ❶ 교부세 정산 → ❷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(잔여의 30%) → ❸ 국채상환(잔여의 30%) → ❹ 차년도 추경 또는 미래대응기금 적립
- ☐ (여유자금 운용수익) 채권·주식 등 유망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

※ 구체적인 기금 수입규모는 재경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하여 '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

참 고

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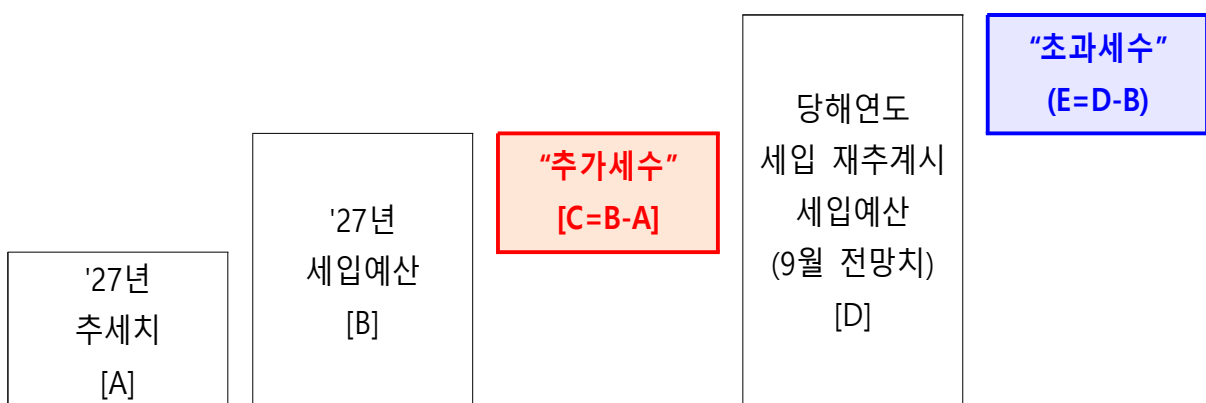
□ [추가세수] 경제구조 변화 → 장기추세 상회분

- **(개념)**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제구조 변화, 대규모 경기변동에 따라 장기추세를 상회하여 발생한 내국세 수입 증가분
- **(계산)** 차년도 세입예산 -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에 기반하여 산정한 추세치

□ [초과세수] 세수추계 오차 →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

- **(개념)**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경기변동, 세수추계 오차 등으로 당해연도 당초 세입예산을 상회하여 발생한 내국세 수입 증가분
- **(계산)** 변경된 내국세 수입(세입 재추계) -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

구분	추가세수 (Windfall Revenue)	초과세수 (Surplus Revenue)
기준점	장기 추세치	당해연도 세입예산
성격	경제구조 변화 또는 큰 폭의 경기변동(Super Cycle)	세수추계 오차 또는 단기 경기변동
재정적 대응	미래대응기금 적립	추경 활용, 국채 상환, 미래대응기금 적립, 세계잉여금



[A] '27년 추세치 = '25년 결산액 × (1 +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)²

[B] '27년 세입예산: '26.12월 국회에서 결정된 '27년 세입 전망치

[C; 추가세수] '27년 추세치를 상회하는 세입예산

[D] '27.9월 재경부에서 당해연도 세입진도율 등을 감안하여 재추계한 세입예산

[E; 초과세수] 재추계한 세입예산에서 기존 세입예산을 뺀 값

1)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

- (현재) 교부금 = 내국세 × 20.79%
- (개편) ①경제여건 · 학령인구 변화 등 고려한 산식 개편 ②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교육 · 인재분야 재투자 보장

① (산식 개편)

▶ 전년도 교부금 × (1 +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) × [1 + (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× 0.35)]

② (재투자 보장)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 · 인재계정* 설치 및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교육 · 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

* (용도) 영유아 · 고등 · 평생교육, 교부금 감소시 보전,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

- (개편효과) ①교부금 총액 및 ②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*, 교육 분야 전반의 ③균형투자 달성, 교부금의 ④급변동성 해소 등

* 당초 중기(‘25-’29, 4.4%)대비 총액 증가율 확대, 1인당 교부금 증가율(‘26-’30) 과거 20년 평균 상회

2)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

- (현재) 교부세 = 내국세 × 19.24%

- (조정) ① 모수 변경 ② 연동구조 유지

① (모수)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 제외

② (연동구조) 19.24%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

- (재투자)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 설치 → 지역성장거점 조성, 정주여건 개선 등 재투자 확대

- 경제상황 ·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,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(교부세법) → 지방재정 안정적 운용 뒷받침

◆ **청년, 성장동력, 지방, 교육·인재 4대 분야 NEXT 원칙*** 부합 사업

* **N**자본축적(New-Capital), **E**과감한 투자(Enterprising), **X**탄력적 집행(fleXible), **T**시급성(Timely)

① **(청년)** 일자리, 주거, 자산, 혼인·출산 등 **성장단계별 종합 지원**

- 첨단·선호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,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
- 청년선호 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 - 전세 - 자가 주거사다리 구축
- 결혼·출산·양육 비용 부담 완화 및 청년문화 생활 지원

② **(성장동력)** AI, 3대 메가프로젝트, 7대 SEED 등 **첨단전략산업 육성**

- 프론티어급 AI 개발, 피지컬 AI, AIDC 등 AI 3강 도약 지원 및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·용수 등 인프라 구축
-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위해 SMR, 우주·항공, 양자 등 미래성장을 주도할 7대 SEED*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

* SMR, 핵융합, 재생에너지, 양자, 우주·항공, 첨단바이오, 첨단공급망

③ **(지방)**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**지방주도성장 기반** 마련

- 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 및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
- 행정통합, 지방미래성장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 지원

④ **(교육·인재)** 초격차 인재양성 및 **희망사다리** 구축

- 이공계·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우수 인재 유치 지원
- 대학 경쟁력 제고, 직업·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·평생교육 강화
-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 지원

4 기금의 운용

1) 기금 관리

- **(다부처기금*)** 기금관리주체(기획처)는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, 유관부처가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소관 재정사업 직접 수행
* 예: 기후대응기금(기후에너지환경부), 복권기금(기획예산처) 등
- **(계정)** 계정별 역할 및 성격 등을 고려, ① **총괄계정**, ② **청년계정**, ③ **성장동력계정**, ④ **지방계정**, ⑤ **교육·인재계정** 등 5개 계정 설치
- **(거버넌스)** 전문가·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**기금운용 심의회** 구성 +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

2) 여유자금 운용: 전담 자산운용체계 통해 적극적 자산운용

-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**전담운용기관 체제**를 통해 여유자금 운용
 - 기금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**적극적 자산운용** 통해 최소수익률 목표* 초과달성 노력
- * 예: 무위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 3.85%(8.18일 종가 기준)

V. 향후 일정[안]

- (8.21일) 10:00 **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** 상정·논의
→ 11:10 **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**(기획처·교육부·행안부)
-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 **입법예고**(8.24~28일)
- (9.1일) **국무회의** → (9.3일)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 **국회 제출**

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

2026. 8. 21.

교육부·기획예산처

순 서

I. 개요	13
-------------	----

II. 현황 및 문제점	14
--------------------	----

II. 개편 방안	15
-----------------	----

III. 향후 일정	16
------------------	----

I. 개요

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요

- (목적) 지방자치단체(교육청)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·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**교육의 균형발전 도모**
- (근거)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
- (재원) 내국세의 20.79% + 국세 교육세 일부(특별회계 전출금 제외)
※ 유사한 제도로 일반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존재(내국세의 19.24%)
- (규모) '25년 70.3조원, '26년 추경 76.4조원(본예산 +4.8조원)

2 지방교육재정(교육비특별회계) 구조

※ '25년 가결산 기준

▶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교육자치법」 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편성, 시도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 후 예산 집행

- (수입) 징세권이 없어 세입의 대부분(89%)을 국가·지자체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, 특히 교부금이 높은 비중(69%) 차지
- (지출) 경직성 경비인 교직원 등 인건비(58%)* 및 학교운영비(19%)와, 학교 신·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(14%)에 활용 중

* 세출결산 대비 인건비 : ('21) 46.3조원(55.2%) → ('25) 56.4조원(58.4%), 연 +2.5조원

< 참고 : 지방교육재정 세입·세출 구조 >

공동 재원부담		시·도교육청 시·도교육감 예산편성 및 집행(2025년 가결산 기준)	
		세입 결산(101.9조)	세출 결산(96.6조)
국가	⇒	중앙정부 이전수입 (74.5조)	⇒ 교직원 등 인건비(56.4조)
		지방교육재정교부금(70.8조) 특별회계 전입금(3.2조) 국고보조금 등(0.5조)	⇒ 유·초·중·고 학교운영비(18.1조)
지자체	⇒	지자체 이전수입 (15.8조)	⇒ 학교신증설·교육환경개선비 (13.8조)
		지방교육세(7.6조) 시·도세 전입금(4.2조) 담배소비세 전입금(0.6조) 기타(3.4조)	⇒ 기타(8.3조)
교육청	⇒	기타수입(기타이전수입, 기금전입금 등) 11.7조	

II. 현황 및 문제점

- **(학령인구 감소)** 학령인구 급감*에 따라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**현행 교부금(내국세 20.79%+국세 교육세 일부) 개편 요구 증대**

* 학령인구(만3~17세) 추이 : ('10) 880만명 → ('25) 591만명 (△288만명, △32.8%)
교부금 규모 추이 : ('10) 32.3조원 → ('25) 70.3조원 (+38조원, +117.6%)

- 한편,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이 교직원 등 인건비, 학교운영비에 지출되고 있어 **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정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실정**
※ 10년간('16~'25) 초·중고 학생 수는 87만명 감소한 반면, 학교는 308교, 교원은 9천명 증가

- **(경직적 재정운용)** 내국세 연동 구조는 국가 차원의 탄력적 재정 운용이 어렵고, 법인세 등 내국세 급변동에 따라 **교부금 불안정성 심화***

*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, 연도 중 추가경정예산 및 불용은 불안정성 확대 :
'23년 △10.4조원(불용), '24년 △4.3조원(불용), △1.4조원('26년 정산), '25년 △2.0조원(추경)

< 참고 : 2019~202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(조원) >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지방교육재정교부금 (전년대비 증가율)	55.2 (11.5%)	53.5 (△3.1%)	59.6 (11.4%)	76.0 (27.6%)	65.4 (△14.0%)	64.6 (△1.2%)	70.3 (8.8%)	76.4 (8.8%)

- 세수 호황에 따른 **교부금 단기 과다 교부**는 지방교육재정의 **과도한 지출 규모 확대(선심성 지원 등) 유도 및 재정 비효율 초래**

▶ “세계잉여금 정산과 연도 중 추가 교육교부금이 배분되는 등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* 심화” ('23, 감사원)

* 추경 신규사업의 높은 이·불용률과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등

- **(교육투자 불균형)** 초·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으나 (초·중등 166%), **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(고등 69%)**

※ 학생 1인당 공교육비(천\$, 한vsOECD, '22년) : (초·중등) 22.5vs13.5 (고등) 14.7vs21.4

- 한편, AI·디지털 교육, 기초학력 보장,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**초·중등 교육 현안이 여전히 산적하여 교부금 안정적 확보도 중요**

⇒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지방교육재정 구조 특수성, 미래 교육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한 합리적인 개편 추진

Ⅲ. 개편 방안

1 주요 내용

① (산식)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부금 산정

▶ 전년도 교부금 x (1 +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) x [1 + (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x 0.35)]

※ 국세 교육세는 전부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

- (경상성장률)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교부금을 늘려나가는 한편, 세수 연동 대비 교부금 변동성 완화

< 참고 : 전년 대비 명목 GDP 및 내국세 변화율 추이(%) >

구분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	'25
명목 GDP	5.3	5.5	3.8	1.7	0.9	8.0	4.7	3.4	6.5	4.4
내국세	13.3	10.5	11.9	0.4	△3.4	20.0	18.9	△13.1	△2.5	10.7

- (학령인구 변화율) 세출 중 학생 수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교직원 인건비(60%)는 반영 제외하되, 최근 인건비 상승세 및 현장 충격 완화를 고려하여 학령인구 변화율의 35%만 반영

② (미래대응기금 내 교육·인재계정 설치)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 (추가세수 제외 내국세 20.79%와의 차액)은 교육·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

※ (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.79%) - (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)에 해당하는 금액을 ①교육·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 + ②타계정 전출 불가 법률 명시

- 영유아 및 고등·평생교육, 교부금 감소시 보전,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교육·인재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

※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활용 가능

③ (교부금 보전) 교부금 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(「교부금법」 명시)

제4조(교부금 보전) 국가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(補填)하여야 한다.

2 개편 효과

- ▶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, 늘어나는 미래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**초·중등 교육재정 안정적 확대**
- ▶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**전 생애 주기(영유아~성인)에 걸친 전략적 교육투자를 확대**하여 인재강국 도약 기반 마련

① **(교부금 총액 지속 증가)** 경상성장률 반영 및 전년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* 마련 → 교부금 안정적 증가 보장

*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상 교부금의 보전 조항 마련(전년대비 감소시 차액 보전)

② **(교육투자 의지 계승)** 내국세(전출액 제외) 20.79%는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·인재 분야에 투자 → 내국세 20.79% 연동제 취지 계승*

* 「미래대응기금법」상 교육·인재계정 재원으로 명시

③ **(균형투자 달성)**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·고등·평생 및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 →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

④ **(교부금 급변동성 해소)** 내국세 연동구조 탈피로 교부금의 급등락 문제 해소 및 시·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예측가능성 제고 → 재정 변동성 완화

IV. 향후 계획

□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

-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: '26. 8. 24. ~ 8. 28. (4일)
- 국무회의 안건 상정·의결 및 국회 제출 : '26. 9월 초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공포·시행 : '26. 12월

□ 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 소통 및 모니터링

- 시도교육청, 교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교육 현장 소통 : 계속
- 시도교육청 '27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상황 모니터링 : '26. 10월 ~

붙임 1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도 연혁 및 개정 사유

제·개정 (시행)	변동 비율	변동 사유
'58. 12월 제정 ('59. 1월)	10.5% ('68. 7월~)	○ '59년 신설된 「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」을 시작으로 '68년부터 내국세와 처음으로 연동 - '68년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.5%, 국민학교교원 봉급 전액 등으로 구성돼 있고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총액의 10% 해당하는 금액
'71. 12월 제정 ('72. 1월)	12.98%	○ '71년 교부금법이 제정되었으나, '72년 「경제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」('82. 4월 폐지)에 의해 '73~'82년 교부율 효력 정지 - 국가예산으로 확보 지원(연평균 내국세의 10.85% 수준) ※ '72년 「지방교육교부세법」과 통합하여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정
'82. 4월 개정 ('82. 4월)	11.8% (1.18%↓)	○ '71년 제정법률은 11.8%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, 보통교부금의 10%를 특별교부금으로 규정하여 내국세의 총 12.98% - '82년 개정법률에서 특별교부금을 예산*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, 총 교부율은 내국세의 11.8% * '91년부터 교부금 총액의 11분의 1로 교부
'00. 1월 개정 ('01. 1월)	13.0% (1.2%↑)	○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재정 GNP 6% 확보정책 에 따른 교육재정 확충 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13%로 인상
'04. 12월 개정 ('05. 1월)	19.4% (6.4%↑)	○ 지방교육재정 구조 단순화 등을 위해 기존 보통교부금과 증액교부금* 등을 내국세 대비 비율에 통합 *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통·특별교부금 외에 별도로 증액 교부 가능
'06. 12월 개정 ('08. 1월)	20.0% (0.6%↑)	○ 기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유아교육지원사업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
'10. 1월 개정 ('10. 1월)	20.27% (0.27%↑)	○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(부가가치세 5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) -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, 내국세 감소로 줄어드는 교부금 보전
'18. 12월 개정 ('19. 1월)	20.46% (0.19%↑)	○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(국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 11%→15%) -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, 내국세 감소로 줄어드는 교부금 보전
'19. 12월 개정 ('20. 1월)	20.79% (0.33%↑)	○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(국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 15%→21%) -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, 내국세 감소로 줄어드는 교부금 보전

※ 2001년 이후 교부율 상승은 교부금 순증이 아닌, **재원 구조 개편 및 세제 개편 (재정 분권)**에 따른 교부금 보전 조치 결과

붙임 2

지방교육재정 세입·세출 구조('25년 가결산 기준)

❖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교육자치법」 등에 따라 교육감이 세입·세출 예산 편성, 시도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 후 예산 집행

시·도교육비특별회계 규모('25년 가결산 기준 101.9조원)

세 입		세 출	
중앙정부 이전수입 (74.5조원) [73.1%]	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(70.8조원) [69.4%]	①보통(67.7조원): 내국세* 총액의 20.79%의 96.2% + 국세 교육세** 일부(특별회계 전출분 제외) *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증여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증권거래세, 인지세, 과년도수입 ** 금융·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.5%, 개별소비세액의 30%, 교통세액의 15%, 주세액의 10%	⇒ 인건비 (56.4조원) [58.4%] 교원, 교육전문직, 기타직 등 인건비
	국고 보조금 (0.5조원)	②특별(2.5조원): 내국세 총액의 20.79%의 3.8%	⇒ 전출금 (18.1조원) [19.1%]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전출금
	특별회계 전입금 (3.2조원)	③증액(0.5조원):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23.75%(47.5%의 절반)	⇒ 자본지출 (13.8조원) [14.3%] 학교신설,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 등
지자체 이전수입 (15.8조원) [15.4%]	시·도 전입금 (12.4조원)	국고보조금으로 별도 통지·교부된 금액 (교육급여지원 등)	⇒ 물건비 (3.9조원) [4.0%] 공공요금 수용비 등운영비, 여비 등
	기타 (3.4조원)	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(국세 교육세 일부 + 국고보조금)	⇒ 이전지출 (4.1조원) [4.2%] 지자체 보육료 보조, 민간이전지출 등
		①지방교육세(7.6조원): 취득세액의 20%, 등록세액의 20%, 균등할 주민세액의 10~25%, 재산세액의 20%, 담배소비세액의 43.99%, 레저(경주·마권)세액의 40%, 자동차세액의 30%	⇒ 내부거래 (0.3조원) [0.3%] 기금 전출금
자체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(6.7조원) [6.5%]		②담배소비세(0.6조원): 특별시·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%	⇒ 예비비 등 (0.1조원) [0.1%] 자연재해 대비 등
		③시·도세(4.2조원): 시·도세 총액의 일정률 (특별시 10% 광역시 및 경가지주도 5% 그밖에 도 3.6%) 및 지특회계 시·도전환사업보전금(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)	⇒ 결산상 잉여금 (5.3조원) 이월액, 보조금반환, 순세계잉여금 등
		①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(0.2조원): 학교용지 확보 경비의 50%	
내부거래 (5.0조원) [4.9%]		②지자체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(0.1조원):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5%	
		③교부금 보전금(1.3조원): 지방소비세 확대분(부가가치세 6%)의 20.27%	
		④기타(1.9조원): 교육급여보조금 급식비보조금 등	
		- 전년도 순세계잉여금, 전년도 이월금, 재산수입, 사용료 및 수수료, 이자수입, 기타수입 등	
		-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제외한 기타기관 (민간단체, 협회 등) 지원금	
		- 기금 전입금(5.0조원)	